

심 사 보 고 서

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

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06
----------	------

2022. 3. 25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3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3월 16일

-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중근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에서 설립 예정인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출연목적

- 충청북도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위하여 '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'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
- 2022년 설립예정인 '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'의 원활한 설립·운영으로 방문요양, 가사간병 등 유사성격 돌봄사업의 통합·연계 제공 및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

○ 출연 예정금액 : 1,560백만원

○ 출연내역 :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, 설치·운영비

3. 검토보고 요지 (이덕항 수석전문위원)

가.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.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법적요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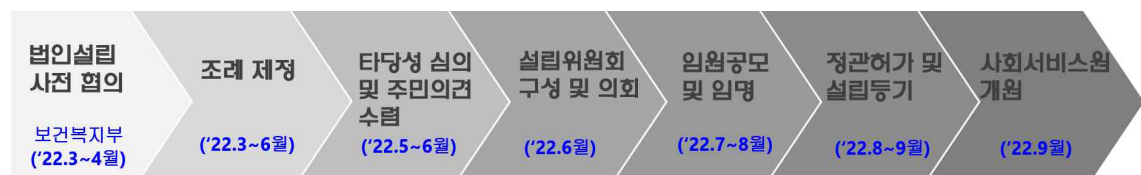
□ **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**

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나. 종합의견

- 본 출연계획안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부 주도로 분산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'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'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(1,560백만원)를 출연하려는 것임.
- 출연금 1,560백만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따른 초기 설치비와 운영비로 기본재산(100백만원),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액(980백만원)과 도비매칭비용(480백만원)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현재 전국 사회서비스원은 총 14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. '19년 4개소(서울경기·대구경남)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, '20년 7개소(인천·대전·광주·강원·충남·세종·전남), '21년 3개소(전북·울산·제주)가 설립되었으며, '22년에는 충북 등이 설립예정임.
-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 운영과 민간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써, 사회서비스원의 차질없는 설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절차>



- 본 사회서비스원 개원 이후에는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비롯하여, 국·공립 어린이집, 다함께 돌봄센터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영유아시설부터 어르신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국공립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등 충청북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설립초기에 일부 혼선과 어려움이 예상되므로, 먼저 시행중인 타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벤치마킹하고 사회복지 전반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추진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」

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100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3월 8일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에서 설립예정인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대상기관 :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⁹⁾
- 출연목적
 -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
 -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으로 방문요양, 가사간병 등 유사성격 돌봄 사업의 통합·연계 제공 및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
- 출연 내역 및 예정금액

출연내역	예정금액	재원	비고
합 계	1,560백만원		
기본재산	100백만원	도비 100%	
사회서비스원 설치비	500백만원	국비 100%	
사회서비스원 운영비	960백만원	국비 50%, 도비 50%	

- 기대효과
 - 공공성·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
 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 -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

3. 의안전문 : 붙임(출연 심의요구서)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기타

9)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특수법인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복지정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복지보훈팀	서동경	우영미	박선경	3013

기관명	(설립 예정)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		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(이사장) : 미정 ○ 설립계획(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청주 흥덕구 공단로 87(복대동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) - 규모 : 3개팀 20명 - 기관성격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법인 - 주된사업 : 국공립시설·사업 수탁운영,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등 							
출연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1,560백만원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							
	구분		2021년 예산액 (출연액)	2022년 요구액	재원별			
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기본재산		-	100	100		100		
사회서비스원 설치비		-	500	500	500			
사회서비스원 운영비		-	960	960	480	480		
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,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 ○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과 국공립시설·사업 수탁 운영,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 지원 필요 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7조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 - 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			
지도감독부서인견 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, 시군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및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 ○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(사회서비스원)의 기본재산 출연과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: 해당없음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: 해당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공적책임이 높은 시설이나 민간의 수탁 기피 시설을 운영할 새로운 공급체계 마련, 복지시설·사업 위탁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시군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,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중심의 돌봄 제공기관 설치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
- 이에, 충청북도에서는 2021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 연구,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, 2022년 3월 보건복지부의 ‘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선정’ 공모에 참여하여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
-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(사회서비스원)에 기본재산을 출연하고,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 향후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 선정 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내역	2021년 예산액(최종)(C)	2022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(B-C)
합계	-	-	1,560	1,560	1,560
기본재산			100	100	100
사회서비스원 설치비			500	500	500
사회서비스원 운영비			960	960	96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(안)

□ 설립개요

- 설립형태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법인
- 설립시기 : 2022년 9월 개원 예정
- 주사무소 : 청주 흥덕구 공단로 87(복대동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)
- 기본재산 : 도비 1억원 출연 ※ 충북여성재단 규모로 출연 예정
- 예산규모 : 운영비 연 19억원(국비 50%, 도비 50%), 설치비 5억원(1회, 국비 100%)
- 조 직 : 3개팀 20명(원장, 경영기획팀 7, 서비스운영팀 5, 민간지원팀 7)
- 사업구성
 -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(8개 이상) :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두 종류 이상 필수
 -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(2개소 이상) :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
 - 종합재가센터 종사자 등을 이용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
 -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: 컨설팅, 대체인력, 안전점검 등

□ 세부 추진방안(기능별) ※(공모기준) 국공립시설·사업 8개 이상, 종합재가센터 2개소 이상

- ①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: '22년 2개소(돌봄) → '26년 15개소(돌봄, 기피시설 등)
 - 법인 부족, 민간수탁 기피 등으로 위탁추진에 난항을 겪는 시군 시설·사업 중점
 - 돌봄기능이 있는 신규시설·사업 수탁을 통해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
- ② 종합재가센터 설치·운영 : '22년 남부권 1개소, '24년 북부 또는 중부권 1개소
 - 민간기관의 재가서비스와 차별화된 긴급돌봄 역할 강화
(코로나19, 갑작스런 질병·사고,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돌봄지원 등)
 - 유사서비스(맞춤형돌봄,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) 연계를 통한 재정 및 운영 효율화
- ③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,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,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수행
 - 표준운영모델 개발·보급, 컨설팅,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

설립·정착기('22~'23)

·2022년 하반기 서비스원 개원
·민간수탁기피, 돌봄 관련 신규 시설·사업 수탁(8개소)
·남부종합재가센터 기본형 설치

확장기('24~'25)

·국공립시설 수탁 확대(4개소)
·종합재가센터 기본형 추가 설치
·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 민간기관 품질관리 지원

안정기('26~)

·국공립시설 수탁 확대(3개소)
·종합재가센터 확대형 전환 검토
·이용자, 민간기관의 욕구조사 등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확대 지원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	구분	출자	
주관부서	복지정책과		출연	1,560백만원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
- 방문요양, 가사간병 등 유사성격 돌봄사업의 통합·연계 제공 및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
- 사업기간 : 2022. 7 ~ 12월
- 출연액 : 1,560백만원
- 주요내용 :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, 설치·운영비
- 기본재산 100백만원, 설치비 500백만원, 운영비(6개월분) 960백만원
- 출연근거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분담비율
합계	1,560		
기본재산	100	충북여성재단 규모로 출연	도비 100%
사회서비스원 설치비	500	사회서비스원, 종합재가센터 설치	국비 100%
사회서비스원 운영비	960	인건비 4.4백만원×20명×6월=528백만원 운영비 190백만원, 사업비 242백만원	국비 50%, 도비 50%

□ 기대효과

- 공공성·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
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-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제한 및 구심적 역할 부재 우려
-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따른 국비 확보 차질

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시·도 사회서비스원(이하 "시·도 서비스원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설립한 시·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시·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) ① 시·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
 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
 -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
 - 4.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
 - 5.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·회계·법무·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·자문
 - 6.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
 - 7.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·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
 - 8.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
 - 9.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
 - 10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그 밖에 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30조(재원) 시·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·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※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제정 추진 중(현재 법제처 심사 중, 2022년 3월 처리 예정)